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1.1. 본회의 명칭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약칭 "중앙아 한교협")라 한다. (이하 "협의회"라 한다)
- 1.2. 영문명은 "Association of Korean Studies Professors in Central Asia (AKSPCA)"라 한다.
- 1.3. 러시아어명은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корееведов (ЦААПК)"라 한다.

제2조 위치

협의회는 사무실은 회장 소재지 대학에 둔다.

제3조 협의회의 목적

- 3.1 중앙아시아 소재 대학의 한국학(이하 '한국학'은 한국어교육을 포함한다.)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호 정보를 교류한다.
- 3.2 중앙아시아 지역 한국학 학습자의 실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중앙아시아 각국 한국학교수협의회의 제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3.3 한국 및 전세계 한국학 교육자간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한다.
- 3.4 대외적으로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의 통합된 의사를 대변한다.
- 3.5 본회의 목적과 활동을 알리고 홍보한다.
- 3.6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여러 사업을 진행한다.

제4조 협의회의 사업

- 4.1 회원 소속 대학의 한국학 관련 현황 파악
- 4.2 각국 한국학교수협의회 및 회원 소속 대학의 주요 행사 지원(백일장, 말하기대회, 올림피아드, 퀴즈대회, 체육대회, 태권도대회 등)
- 4.3 정보교환(교재, 교수법, 취업 및 학생 실습에 대한 정보교류, 학생생활 지도)
- 4.4 교재 연구 및 출판(주교재, 부교재, 교안, 교구)
- 4.5 협의회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 행사(세미나, 학술대회) 개최
- 4.6 협의회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총괄하는 학술지, 자료집 및 소식지의 발간
- 4.7 협의회 회원의 교수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수 연수의 추진
- 4.8 한국 및 세계 전지역 한국학 연구 및 교육기관과의 공동 연구 추진
- 4.9 장학사업의 전개
- 4.10 한국소재 대학과의 교환학생 및 유학생 추천 사업에 대한 정보교류

제2장 회원의 자격

제5조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5.1 중앙아시아 대학의 한국학과 관련된 분야에 재직하는 자
- 5.2 기타 한국 정부에서 파견한 교육관계자

제3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6조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언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7조 모든 회원은 협의회회 회칙과 시행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협의회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8.1 아래의 사람은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1) 회원 탈퇴를 위하여 본회나 임원회에 그 의사를 통보한 자
- 2) 협의회회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자

8.2 회원의 자격 상실 결정은 정기 및 비정기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성

9.1 "임원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 중앙아시아 5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지회장(각국 1인), 이사(총무, 연구, 대외협력 담당 각 1인), 간사(1인)로 구성한다.

9.2 감사(2인)와 자문위원(제한 없음)을 별도로 구성한다.

제10조 임원의 기능

회 장: 협의회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제반 사업을 진행한다.

지회장: 소속 국가 협의회회를 대표하며, 본 협의회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제반 사업을 진행한다.

이사: 회장을 보좌하여 협의회회의 총무, 연구 및 대외협력 분야를 담당한다.

간사: 총무이사를 보좌하여 협의회회의 실질적 실무를 담당하고, 문서 기록, 보관, 발송 및 협의회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감사: 협의회회의 운영을 감사한다.

자문위원: 협의회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1.1 회장 선출

- 1) 회장은 정기총회 시 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 2) 회장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며, 2명 이상일 경우 최고 득표자를 회장으로 한다.
- 3) 회장 후보자는 각 대학의 한국어(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자로 임용 후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11.2 기타 임원의 선출

- 1) 회장이 부회장 1인, 이사 3인(총무, 연구, 대외협력 담당), 감사 1인을 지명한다.
- 2) 단 중앙아시아 5개국 지회장은 기존 5개국 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현재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국가나 그 활동이 유명무실한 국가는 본 협의회 회장이 지회장을 임명한다.

11.3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11.4 감사의 선출과 임기는 회장의 선출과 임기와 동일하다.

11.5 자문위원의 위촉과 해임은 협의회 의사를 모아 회장이 담당하며, 인원과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장 회의

제12조 정기총회

12.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되, 그 날짜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다.

12.2 정기총회의 중요한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및 임원회의 사업 보고
- 2) 재정 보고 및 감사 보고
- 3) 회장, 감사 선출
- 4) 총회 인준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업 결정
- 5) 정기총회는 개최 2개월 전에 모든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시총회

13.1 회원 10인 이상이 서명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소집한다. 단, 상정된 안건만 처리한다.

13.2 회장이 총회 전 6개월 이상 공석일 때, 회장 선출을 목적으로 한 경우 부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회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15조 회의 의장

15.1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15.2 회장이 부재중일 때는 부회장이 의장 업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의결정족수

회칙 개정을 제외한 안건 처리를 위한 정족수는 회의 출석 회원으로 하되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 임원의 보선

17.1 어떤 임원직이 공석이 될 경우 그 임원을 임명 대체 시킬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7.2 회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부회장이 그 잔여 임기를 대행하고 그 이상일 경우는 임시총회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제6장 회계연도와 재정

제18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각종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7장 회칙의 개정

제20조 회칙의 개정, 발의는 1개월 전에 회원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21조 회칙의 개정은 정기 및 비정기 총회에서 토의할 수 있다.

제22조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4조 본회의 정관은 총회의 승인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8장 부칙

1. 이 정관은 201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초대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014년 6월 27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최초 회계연도는 2014년 6월 27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